

서울특별시 성북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수현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수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08
----------	-----

발의연월일 : 2023년 3월 17일

발의자 : 경수현, 김육영, 이호건, 박영섭,
김경이, 정해숙, 양순임, 소형준,
이용진, 강수진, 정윤주, 정기혁,
정병기

1. 제안이유

최근 여성의 경력 ‘단절’이라는 부정적 의미의 용어에서 ‘보유’라는 긍정적 의미의 용어로 전환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이에 본 조례에서도 이러한 긍정적인 이미지의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고용가치 재정립을 위한 선제적 대응의 이미지를 부각하고자 한다. 또한 「성북여성취업교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 조문을 추가하여 센터의 직업훈련교육 기능 및 시설 운영의 안정적인 법적 정당성을 갖추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 전체의 ‘단절’ 용어를 ‘보유’로 변경.(안 전체)
- 나. 상위법의 변경에 따라 문구의 변경과 조문의 변경.(안 제5조)
- 다. 제8조제4호를 “경력보유 유지를 위한 사업”으로 변경.(안제8조)
- 라. 업무 및 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문을 변경 및 신설.(안제9~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나. 협조부서 : 여성가족과

다. 예산조치 : 없음

라. 입법예고: 2023. 3. 17. ~ 2022. 3. 22.

서울특별시 성북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성북구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경력단절여성등”을 “서울특별시 성북구 경력보유여성등”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경력단절여성등”이란”을 ““경력보유여성등”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경력단절을 방지하기”를 “경력보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구에”를 “서울특별시 성북구에”로 한다.

제4조 중 “경력단절여성등”을 “경력보유여성등”으로 한다.

제5조 중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으로, “제4조의 기본계획과 같은 법 제5조”를 “제5조의 기본계획과 같은 법 제6조”로, “연도별시행계획”을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를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경력단절여성등”을 “경력보유여성등”으로 한다.

제8조제1호 중 “경력단절여성등”을 “경력보유여성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경력단절여성등”을 “경력보유여성등”

으로 한다.

4. 여성의 경력보유를 유지하기 위한 사업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시설의 설치·운영) 구청장은 제8조 각 호에 규정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0조를 제11조로 하고,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업무 또는 시설의 위탁)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사업과 시설의 운영을 관련 단체나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본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한 바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서울특별시 성북구</u> <u>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u> <u>촉진에 관한 조례</u>	<u>서울특별시 성북구</u> <u>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u> <u>촉진에 관한 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u>」에 따라 <u>서울특별시 성북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u>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및 지역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u>경력단절여성등</u>”이란 혼인 · 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 2. “<u>경제활동 촉진</u>”이란 서울특별시 성북구·교육기관·기업등이 <u>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u>	제1조(목적) ----- <u>서울특별시 성북구 경력보유여성등</u>----- ----- ----- ----- ----- -----. 제2조(정의) ----- -----. 1. “<u>경력보유여성등</u>”이란 ----- ----- ----- ----- ----- -----. 2. ----- ----- ----- <u>경력보유 여성의 경제활동</u>

고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말한다.

3. (생략)

4. “여성고용업종”이란 「근로
기준법」 제11조의 적용 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여성
노동자가 상시 고용되어 있는
구에 소재한 업종을 말한다.

제4조(사용자의 책무) 사용자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축
진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에 노
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등) 구청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기본계획과 같은 법 제
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
북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
동 촉진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
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
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축
진 시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
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참여를 지원하기 -----
-----.

3. (현행과 같음)

4. -----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

제4조(사용자의 책무) -----
경력보유여성등-----

-----.

제5조(시행계획 등)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
단절 예방법」-----
제5조의 기본계획과 같은 법 제
6조----- 연도별
시행계획-----
---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
동 촉진에 -----

-----.

제7조(실태조사 등) ① -----
경력보유여성등-----

-----.

② (생 략)

제8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지원방안을 마련 할 수 있다.

1. 경력단절여성등의 진출이 유망한 직종 및 구청장이 선정하는 여성고용 업종에 여성이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2. 3. (생 략)

4. 경력단절 예방 사업

5. (생 략)

6. 그 밖에 구청장이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및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본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지원사업) -----

-----.

1. 경력보유여성등-----

--

2. 3. (현행과 같음)

4. 여성의 경력보유를 유지하기 위한 사업

5. (현행과 같음)

6. ----- 경력보유여성등-----

제9조(시설의 설치·운영) 구청장은 제8조 각 호에 규정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조례」가 정한 바에 따른다.

<신 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

제10조(업무 또는 시설의 위탁)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사업과 시설의
운영을 관련 단체나 법인에 위
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업무를 위
탁하고자 하는 경우, 본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한 바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